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의무화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01. 12.
3. 회부연월일 : 2026. 0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학칙으로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 -----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17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음. 동 제도는 법률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대학에서 학칙을 수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통상적으로는 졸업

유예로 부르기도 함.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25년 4월)에 따르면, 응답 학교 123개교 중 108교(87.8%)가 학사 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동 제도는 대학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보임.

다만, 123개교 중 15개교는 여전히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던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간 동 제도 운영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이미 충족한 학생이 학위 취득 시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진로 탐색·취업 준비·국내외 경험 쌓기 등 다양한 사유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음.

-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졸업유예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취업할 확률도 높고, 취업할 경우 임금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음.¹⁾

1) 이전이 외,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제4호, 2017. 12.

해당 연구는 졸업유예 경험자가 취득한 학벌이나 학점, 자격증 등 일련의 신호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졸업유예 경험의 무작위 처치가 취업할 확률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그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로 탐색·취업 준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대다수의 학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조사 응답 대학 123개교 중 87.8%)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졸업 요건 충족 후에도 졸업 인증을 미신청하는 등의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동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²⁾

또한, 동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를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균관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등에서는 학사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구 분	주요 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령을 통해 제도 운영을 규제하기 보다는 학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교육부 조사('25.4월)에 따르면, 응답학교 123개교 중 1개 학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일부 학과만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교육 등 학사 운영상 제한된 사유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임.

구 분	주요 내용
성균관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기존 제도 대비 학생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지는 추가적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서울대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재학생 신분을 유지토록 하는 것과 다방면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권은 대학에 있어야 하며, 교육 철학과 교원-학생 소통과 대학평의회 등 학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포항공과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를 법률로 일괄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각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칙 체계와의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자율화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